

(04427)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3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8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임아영[6578]/E-mail : rimaah90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2471호

시행일자 2023. 6. 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600(2023. 5. 31.)
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00호(2023. 5. 31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94호, 2022.12.27.)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어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.

- 다음 -

가. 주요내용

-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(수술코드) (안 [별첨 2])

나. 시행일 : 2023. 6. 1.

#붙임자료 : 1. 보건복지부 공문 1부.

2. (제2023-100호) 일부개정안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*수신처 : 각 시도지사, 대한의학회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, 각과개원의협의회